침묵의 살인자, 석면

석면은 열을 버티는 힘과 유연성이 강해 건축자재 및 보온재, 자동차 부품 등에 널리 활용돼왔다. 하지만 석면이 우리 몸에 입히는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오랜 잠복기 끝에 병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석면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까닭이다.

1급 발암물질

석면 가루는 바늘 모양으로 날카롭다. 다른 분진보다 폐에 침투되기 쉬운 형태로 일반 분진은 5㎛ 이하만 폐에 침투되지만, 석면은 5~10㎛ 이상도 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진도 폐에 들러붙는 것인데, 이때 석면 섬유가 백혈구들을 파괴해 염증과 흉터를 만든다. 이와 같은 위험성으로 WHO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석면 제품의 제조·사용이 부분적으로 금지됐고, 2015년에는 전면 금지됐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는 오는 2027년까지 석면을 해체·제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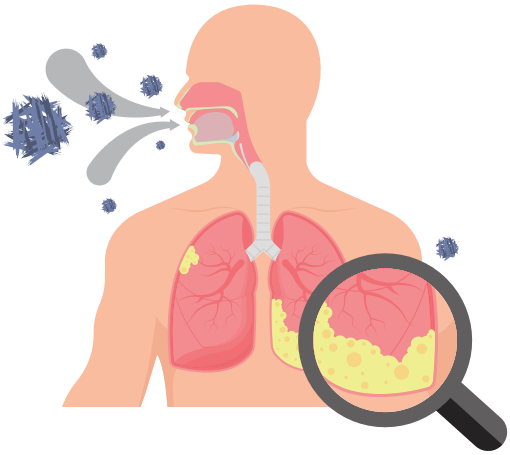

악성중피종

악성중피종은 흉막·심막·복막을 덮고 있는 중피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석면 가루가 흉막에 쌓이면서 발병한다. 잠복기가 40년에 이르며 발병 후 1~2년 이내에 사망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석면에 잠깐 노출되거나 간접적으로만 노출돼도 악성중피종이 생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화 시기부터 석면 제품을 사용한 것을 감안한다면, 2030년경 악성중피종 환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석면폐증

석면분진으로 폐가 섬유화되는 것을 말한다. 특징적인 증상이나 징후가 없으나 석면폐증이 진행될수록 체중감소와 가슴 통증이 동반될 수 있다. 환자가 흡연자라면 상승효과로 폐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지난 5월 석면폐증에 걸린 노동자도 치료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첫 판례가 나왔다.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치료가 끝난 뒤 받을 수 있지만, 석면폐증은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료(요양) 중에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vs 석면피해구제법

직업상 노출로 인한 석면 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구제를 받고, 환경적 노출일 경우 「석면피해구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구제 과정이 수월한 「석면피해구제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나, 산재보험에 따른 보험급여가 더 많을 수 있으므로 잘 따질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